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9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강선우·임오경·박해철

김성회 · 김윤덕 · 서미화

조승래 · 임호선 · 윤호중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아동에게는 최대 10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추가 지급액은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8세</u>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의 아동에게는 최대 10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추가 지급액은 자녀의 수를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u> <u>제1항</u> 에도 불구하고 2세 미	<u>⑥</u> 제1항 및 제5항
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u>18</u>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②	
<u>1</u> 8세	
,,	
· ③·④ (현행과 같음)	
세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u>1</u> 8세	
·.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 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 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 ② (생략)
- ③ <u>제4조제1항</u>에 따른 아동수 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1
<u>]</u>
8세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1항 및 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 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
④ 제4조제6항
,
⑤ (현행과 같음)